

# 중간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

제정 2017. 01. 09

개정 2020. 10. 13

개정 2021. 03. 19

개정 2022. 06. 03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수의학교육 인증규정(이하 “인증규정”) 제12조 1항 및 인증유지관리지침 제2조 1항에 근거한 중간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중간보고서는 인증규정에 따라 수의학교육인증을 받은 대학이 인증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이다.

**제3조(작성 및 제출)** ① 중간보고서는 직전 학년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 제출한다(예, 2023년 5월 30일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1년 3월1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2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 제출한다).

② 중간보고서는 10부의 제본과 소형 이동식 저장장치(USB)를 함께 제출한다.

**제4조(작성 내용)** 중간보고서는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에 따라 제1장 머리말, 제2장 서론, 제3장 자체평가결과, 제4장 종합 및 논의, 제5장 대학의 선진적인 개혁과 모범적인 변화, 부록의 순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. 중간보고서는 총 50쪽 이내의 분량을 원칙으로 하며, 불가피한 경우 초과할 수 있다.

## 제1장 머리말

사실적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포함시키며, 평가를 위해 수고한 교직원 및 기관에 대한 치하의 말 등을 기술한다.(1쪽 이내)

## 제2장 서론

교육실 및 자체평가위원회 등 상설 자체평가기구의 조직구성과 역할 분담, 자체평가에 대한 준비와 계획, 자료 수집, 평가 실시 및 중간보고서 작성 과정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.(2쪽 이내)

### 제3장 자체평가결과

각 영역별 부문과 항목의 현황을 요약하여 기술하며, 주요항목(교수와 학생 및 직원의 수, 예산 등 평가항목의 표를 중심)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. 또한 수의학교육인증평가 또는 전차 중간보고서 평가에서 지적된 각 영역의 미비점과 개선점이 어떻게 보완 및 개선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기술한다.

### 제4장 종합 및 논의

자체평가보고서와 동일하게 영역별로 작성하되, 최근 2년간의 개선 및 변동사항을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한다.(3쪽 이내)

- ① 변화내용이 없는 항목은 '없음'으로 기술한다.
- ② 변화내용이 있는 항목은 그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.

### 제5장 대학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

대학에서 시행 또는 실시하고 있는 혁신적인 변화,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발전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기술한다.

### 부록

개선 및 변화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

## 부 칙

1. 본 지침은 의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